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·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(안 제50조)

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.

나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(안 별표 2)

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('06.12)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1호 중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1항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수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0000.00.00>

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(제34조 관련)

구분	시설규모(일)	배치기준	완화된 배치기준
1	50만 ^{m³} 이상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	
2	25만 ^{m³} 이상 50만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	
3	10만 ^{m³} 이상 25만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	
4	5만 ^{m³} 이상 10만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	· 1급 1명 이상 · 2급 1명 이상 · 3급 2명 이상
5	2만 ^{m³} 이상 5만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	· 2급 1명 이상 · 3급 1명 이상
6	5천 ^{m³} 이상 2만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	
7	5백 ^{m³} 이상 5천 ^{m³} 미만	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	

비고

1. 구분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독처리만 한 후 바로 공급하거나, 완속여과(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가 하루 5m 이하인 것을 말함) 후 공급하는 시설은 ‘완화된 배치기준’을 적용한다.
2. 구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수시설의 원격감시·제어를 통해 정수장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명을 2개 정수시설까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)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.	제50조(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1.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(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<u>제외한다</u>)인 건축물이나 시설	1.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1항에서 같다</u>) -----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21